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55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주진우 · 김승수 · 엄태영
우재준 · 나경원 · 김은혜
조지연 · 신동욱 · 김도읍
서범수 · 고동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업무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의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3(계약방법의 특례)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계약을 분할하거나 입찰참가자격, 기술규격 또는 계약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초 경쟁입찰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수량·규격 및 그 밖의 주요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사유 및 계

약변경 내역을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10년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3(계약방법의 특례) ①</u> <u>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u> <u>제조·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u> <u>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u> <u>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u> <u>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u> <u>다.</u> <u>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u> <u>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실시한</u> <u>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u> <u>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u> <u>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u> <u>체결할 수 있다.</u> <u>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수의</u> <u>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계약</u> <u>을 분할하거나 입찰참가자격,</u> <u>기술규격 또는 계약조건을 특</u> <u>정 업체에 유리하게 정하여서</u> <u>는 아니 된다.</u> <u>④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u> <u>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초 경쟁</u> <u>입찰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u> <u>수량·규격 및 그 밖의 주요</u>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을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10년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